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27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김선민·김준형·조 국

이해민 · 신장식 · 장종태

서왕진 · 김원이 · 박상혁

강경숙 • 전진숙 • 김재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, 보험료 체 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·재산 요건, 체납보험 료의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,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(2019헌마 1165).

이에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법 제53조제5항 및 같은 조

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제10항 및 제109조 제11항)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10항 전단 중 "(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)"를 "(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같다)"로, "보험료를 체납한"을 "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(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,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)가 2회 이상인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① 제10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 횟수, 소득·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제5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

례)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

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(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,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)가 2회 이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보험급여 제한 중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)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09조제10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1회인 사람에게는 보험급여를 하여야 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 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 ① ~ ⑨ (생 략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등(제9항 단서의 ----(제9항 단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) 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 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 -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(이 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 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 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납횟수에서 제외하며, 보험료의 아니한다. 이 경우 제53조제3항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다)가 2회 이상인-----조 제5항・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. ① 제10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<신 설> 보험료 납부 횟수, 소득・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에

대해서는 제5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한다.